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복자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20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신복자, 강석주, 경기문,
곽향기, 김규남, 김영철,
김용호, 김원중, 김지향,
남궁역, 남창진, 박 석,
박춘선, 심미경, 유정인,
이병윤, 이상욱, 이종환,
이효원, 장태용, 최민규,
최유희, 황유정 의원(23
명)

1. 제안이유

- 디지털미디어시티 공급부지의 대부분이 기 매각되어 디지털미디어 시티 기획위원회 안건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비상설화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위원회 정비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
- 또한 기획위원회 심의 기능 축소에 따른 당연직 위원장, 위원장 수, 간사 직급 현실화 등 조례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기획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디지털미디어시티 기획위원회의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문구 수정함(안 제13조)
- 나.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장 수 변경, 간사 직책 현실화와 위원회의 비상설화 명문화, 해촉 규정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14조)
- 다. 상설위원회의 규정인 위원의 임기 조항은 삭제하고, 위원회 해촉 규정은 제14조에 삽입하였으므로 삭제함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“디지털미디어시티에”를 “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”로 하고, “시장의 정책자문에 응하고”를 “정책자문과”로 하며, “둔다”를 “구성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4조 제1항 중 “3명”을 “2명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시장”을 “행정1부시장”으로, “2명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4조 제5항 중 “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정책관이 된다”를 “담당사무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14조 제6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<u>디지털미디어시티에</u> 관한 <u>시장의 정책 자문에 응하고</u>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<u>3명</u>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시장과</u> 위원 중 호선된 사람 <u>2명</u>으로 한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디지털미디어시티 담당정책관이</u> 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5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</p> <p>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</u></p>	<p>제13조(설치 및 기능) <u>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</u>---<u>정책자문</u> <u>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성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14조(구성) ① ----- <u>2명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<u>행정1부시장</u>-- ----- <u>1명</u>----- -----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담당사무관으로 한다</u></p> <p>⑥ <u>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,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<u>< 삭제 ></u></p>

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으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위원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